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한위수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요즘 유명 연예인이 성추행 등으로 주점 종업원에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연예기획사로부터 탈세 등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고소내용이나 고발내용이 진실임이 밝혀져 해당 연예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만일 고소내용이나 고발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없을까?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형법 제309조 제1항 참조), 또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0조 참조).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형법 제310조 참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태도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그렇다면 설령 주점 종업원이 유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더라도 그 유명인이 고소를 당한 것 및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표현은 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것으로 표시되든 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표시되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그래서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은 “○○○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다), 고소 고발에 관한 보도가 진실한 사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사실뿐만 아니라 보도된 고소의 내용(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까지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 인사가 ...라고 폭로했다” 또는 “...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해놓고는, 모 인사의 발언 녹취록이나 인터넷 댓글 캡처 화면을 그 증거로 내밀어 폭로사실이나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카더라’ 형식의 무책임한 보도로부터 명예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영미(英美)의 명예훼손법에서도 ‘재공표원칙(republication rule)’이라 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 소문을 지어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쁘다(tale bearers are as bad as tale makers)’는 법언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우리나라의 법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그 전달자가 마스크이라면 일반인보다 파급력이 크며 마스크에서 보도하였다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아져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문을 만들어낸 일반인보다 이를 전한 언론사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 흔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는 상대방에게 ‘신문에 났다’, ‘뉴스에도 나왔다’ 등의 말을 덧붙여 진실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언어습관도 마스크의 영향력과 책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B언론사는 청소년 성범죄를 소재로 한 사회고발영화를 연출하여 유명해진 A영화 감독이 아내로부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동시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였으며 아들을 감금 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보도는 아내와의 인터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A감독의 행동을 비판하는 논조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A감독은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폭행 부분과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A감독은 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B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은 모두 B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언론사가 함부로 보도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는데,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게 할 만큼 적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 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언론사의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새겨두고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판시는 위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 한 언론사는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원예정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과장인 원고가 조합 설립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개인명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도록 강요하였다며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원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대법원(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은 해당 보도가 원고가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 같은 인상을 준 데 대하여,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일찍이 서울민사지법(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성이 당시 정권 실세와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보도한 사안에서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기사화한 경우에는 실제 그 소문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고위 공직자처럼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소 등으로 비리가 없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뉴스 가치가 있으므로 오히려 신속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와 달리 고소에 의한 수사나 민사소송은 고소인이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다. 또한 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 등이 모두 믿을만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들은 피고소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고소장이나 소장 기재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고소 등을 당하였다고 보도되는 것 그 자체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내용인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에 뒤이어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비슷한 취지의 고소가 줄을 잇는 것도 그러한 현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고소인 등이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당한 사실의 보도 자체 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이 보도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유명인으로부터 합의금조로 돈을 받아내거나 최소한 망신이라도 줘서 양값음하겠다는 부정한 의도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는 것 자체로써 고소인 등의 계약에 이용당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근거 없는 사실로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 쉬우므로, 유명인이 고소당하였다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뉴스 가치가 있다거나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취재를 하여 고소장이나 소장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수사기관의 결과발표나 법원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재결과 고소인 등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아직 고소인이나 원고의 주장이 진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이나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나 소장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고소나 고발사실 등이 함부로 보도되는 작금의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는 시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